

#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7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7월 13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)

### □ 제안이유

- 청소년기본법 제27조(청소년지도위원)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,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청소년지도위원은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,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함.(안 제2조)
- 나.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,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 임무를 정함.(안 제4조)
- 다.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 및 제7조)

라.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,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청소년 지도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동 조례가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?	○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단체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음.
○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여건변화가 있는가?	○ 여건변화는 없으나, 상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적극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. 특히, 동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곳은 경기도내 3개 시·군 뿐임.
○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관내 소공원 등 우범지역의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.	○ 그렇게 하겠음.
○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이유는?	○ 경기도내 시·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, 표준안에 따름.
○ 수당과 여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?	○ 지도활동시 식비 10,000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고, 연간 2,000~3,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회의수당 성격은 아님.
○ 취지는 좋으나, 과거 사례를 볼 때 권한없는 지도위원들의 활동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, 또 하나의 단체원만 양산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?	○ 효과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,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. 유해업소 주변 등 청소년 선도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음.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경기도 지침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실태는?	○ 99년부터 동별로 구성되어 318명이 활동하고 있음.
○ 상위법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도 없이 청소년지도위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법아닌가?	○ 조례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, 법에서 정한 공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을 뿐 상부기관 지침으로 제도운영은 가능하다고 봄.
○ 자율방범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능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?	○ 자율방범대는 공원 등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으며, 청소년지도위원은 유해업소 등을 중심으로 선도활동은 물론 생활지도, 수련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됨. 활동 공간과 기능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.
○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시 부적격자가 위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?	○ 검토 보완하겠음.
○ 동별로 지도위원과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두는 것은 관주도의 또 다른 관변단체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?	○ 운영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동별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됨.

#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#### 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## 6. 소수의견 요지

-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권한없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선도활동이 과연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며, 또 다른 단체만 양산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부결 하는 것이 바람직 함.
- 행정동 광역화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하거나, 법령에 근거없이 경기도 지침으로 운영중인 청소년지도위원 제도를 폐지한 후 제정된 조례에 의거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본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함.
-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과 협의회를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구별로 30명이내의 청소년지도위원을 두도록 하고, 조례로 단체를 제도화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는 것이 옳다고 봄.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제124호
의결년월일	2007. 7. 19 (제137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6. 2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「청소년기본법」에 규정되어 있어,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,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청소년지도위원은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,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함.(안 제2조)
- 나.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지도,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청소년지도위원의 주요 임무를 정함.(안 제4조)
- 다.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 및 제7조)
- 라.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,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청소년 지도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
##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7조에 의한 부천시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의 자격,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도위원의 위촉)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, 사회복지단체의 장, 관할동장,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는 제외한다.

1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
2. 청소년 육성 등에 풍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
3.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

② 지도위원은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, 해당 동의 환경·인구, 학교의 위치 및 그 밖에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.

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지도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

제4조(지도위원의 임무)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

2.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, 장려 및 지원
3.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
4.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 조성
5.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, 선도, 지도 및 정화활동
6.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등

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도위원의 해촉)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지도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
2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에 종사하게 될 경우
3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
4.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
5.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경우
6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지도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6조(증표교부)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별표의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)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)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,

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청소년 지도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 
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### 청소년지도위원증(제6조 관련)

(앞면)	(단위/cm)	(뒷면)
① 청소년지도위원증	0.3	8.1
②	1	
③	4.5	
④	0.75	
⑤	0.75	
⑥	1	
0.3		0.3

0.3	4.9	0.3
	5.5	

(비고) 1. 위원증은 앞면에 부천시 마크를 인쇄하고, 연두색 인쇄용지 120g/m<sup>2</sup>로 제작한다.

2. 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
- ① 부천CIP 적용, 한글로 기재
- ② 사진(3cm×4cm)
- ③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발급번호
- ④ 성명
- ⑤ 소속기관명
- ⑥ 철인(발급기관의 철인)

성 명

주민등록  
번호

주 소

위 사람은 「청소년기  
본법」 제27조에 따른  
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  
명함.

년 월 일

부 천 시 장 (인)
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 
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  
시기 바랍니다.